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카페공간 사용·수익허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카페공간 사용·수익허가

나.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최고가 낙찰

다. 입찰예정가격 : 금5,524,080원(금오백오십이만사천팔십원, 부가세 별도)

※ 예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으로서 1년간의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 **입찰참가 시 부가세 미포함한 금액으로 응찰**바랍니다.

라. 시설현황

시 설 명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카페(카페명 미정)
위 치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04-1, 1층)
허가면적 (전용면적)	100.54m ² (32.16m ²)
업 종	휴게음식점

마. 사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7. 12. 31.(1회(2년)에 한하여 갱신 가능)

바. 카페 임대(사용)료 : **최고가 입찰료(낙찰가) + 부가가치세 10%**

사. 주요사항

- 사용수익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전기·수도·난방 등의 관리비는 별도
- 사용재산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고, 연고권 또는 연고권에 기인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음
- 시설물 사용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 준비 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에 포함

※ 본 입찰과 관련한 주요사항은 허가 일반, 특수조건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은 응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답사 및 시장조사를 하고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 일정

가. 입찰서 제출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http://www.onbid.co.kr>)

나. 입찰공고: 2025. 4. 10.(목) ~ 2025. 4. 21.(월)

다. 입찰기간: 2025. 4. 11.(금) 10:00 ~ 2025. 4. 21.(월) 16:00

※ 입찰기간은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임

라. 개찰일시: 2024. 4. 22.(화) 14:00 이후

※ 입찰 자격조건 검증 후 개찰

마. 개찰장소: 전자자산처분시스템(충남경제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시스템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제시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수락한 자(입찰 투찰자는 자동 수락한 것으로 간주)

라. 온비드 회원을 등록하고 공인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낙찰자가 계약시 입찰 참가 자격에 미달하는 자로 확인된 경우 낙찰 무효 처리)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마목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충청남도지사(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중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30%이상)**에 충족한 업체

바.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의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사.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업체

아. 2인 이상 공동참가(컨소시엄)는 불허

4. 입찰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제출서류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대리입찰 및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마. 동일인이 동일물건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서식1] 1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시, [서식2])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 입금증(영수증) 1부.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확인서 1부.
- 취약계층 고용비율(30% 이상) 충족 여부 확인 문서 1부.

구분	제출서류	확인사항	비고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고용비율 확인서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확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취약계층 유형 -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 충족 여부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참고(붙임1,2)
	유급근로자 명부	- 전체 근로자 수	공고시작월 직전 6개월분 (2024.10.~2025.3.)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준수 여부	
	급여대장	- 실제 임금내역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서식3]

※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정방법

- 입찰공고일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수의 6개월 평균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을 계산(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식

$$\text{취약계층 고용비율} = \frac{\text{매월 말일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수의 합(6개월)}}{\text{매월 말일 기준 전체 근로자수의 합(6개월)}} \times 100 \quad 30\% \text{ 이상 충족}$$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 라.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 공공계좌로 입금되고, 행정재산사용료 납부 후 사용자의 환불계좌로 이자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또한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마. 낙찰자는 2025. 4. 30.(수) 17시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일 내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재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 입금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온비드”에서 낙찰자로 자동 결정합니다.
- 나. 개찰 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 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이거나 기타 입찰참가자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차순위 대상 범위: 낙찰자의 낙찰금액에서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이상으로 입찰한 자
- 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일자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8. 사업설명회 및 현장설명

- 가.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나.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실(041-404-1380)에서 설명받으실 수 있으며, 미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필히 현장 확인(주변 지역경제를 감안한 시장조사, 수요조사)을 하여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귀속됩니다. 현장 확인 시에는 사전에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관리실(041-404-1380)으로 연락 후 방문 바랍니다.

9. 입찰의 무효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 시스템상의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및 회원약관을 위배한 입찰
- 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2.5% 미만이거나, 예정가격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
- 다. 본 공고문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하거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가.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정으로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나. 입찰연기 또는 취소공고는 온비드 시스템상의 입찰공고, 연기공고, 또는 취소공고 등에 게재합니다.

11. 낙찰자의 계약 시 제출서류(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 가.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서식4] 1부.
- 나. 보안서약서 [서식5] 1부.

- 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6] 1부.
 - 마. 그 밖에 충남경제진흥원이 요구하는 서류(계약 후 영업개시 5일 전까지 제출)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및 보건증 1부.
 -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장표시) 1부.
 -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각 1부.
- ※ 각종 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합니다.

12. 사업자등록 및 보험가입

- 가. 계약일로부터 영업개시 5일 이내에 사용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일로부터 영업개시 5일 이내에 화재보험(1사고당 3천만원 이상) 및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1인당 1천만원 이상)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 각 1부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용자 조건 준수 및 청렴계약제 이행각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사용자 조건 및 설치·운영 특수 조건을 인지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청렴 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사용자 신청 시 청렴 계약이행각서에 서명·날인 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사용료 납부

- 가. 낙찰자는 1년차 사용료를 사용자 신청 시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낙찰 결정을 무효처리 합니다.
 - ※ 공유재산의 1년차 사용료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나. 둘째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text{(계산식) 해당연도의 재산가액} \times \frac{\text{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사용료}}{\text{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 다. 첫째 연도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고 미납할 경우 사용허가는 무효가 되며, 기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우리재단에 귀속되고 당해 시설물은 재입찰에 부칩니다.
- 라. 기타 제세공과금(전기요금 등)은 재단의 산정기준에 의거 매월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유의사항

- 가. 본 입찰은 온비드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 조건, 사용수익허가 조건, 전자입찰 관련법령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관련 법규, 회계예규 등 포함)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등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임대재산의 점유, 사용 시 각종 인·허가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낙찰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 마. 기타사항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온비드 고객지원센터(☎1588-5321)
 -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충남경제진흥원 재정관리팀(☎041-404-132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 1588-5321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온비드>입찰관리>진행중입찰내역>입찰내역상세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온비드>입찰관리>진행중입찰내역
- 입찰결과 : 나의온비드>입찰관리>입찰결과내역

2025년 4월 10일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장

【서식 제1호】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요	입찰 공고 번호	제 호	입찰 일자	
	입찰 건명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카페공간 사용·수익허가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압찰 보증금	납부	보증금율	○ 입찰(투찰)금액 2.5%	
		보증액	○ 금 원 (₩)	
		납부방법	① 현금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② 보증보험증권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공고는 대리인 입찰이 불가 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참조바랍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p>상기 본인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카페공간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공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재단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허가(일반, 특수)조건 모두 승낙하고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p> <p>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타 인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4.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공고문 참조)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p> <p style="text-align: center;">2025.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p>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_____는(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카페공간 사용·수익허가』
입찰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5.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감)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제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거부	

※ 증빙서류에 포함된 유급근로자, 취약계층 근로자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번호,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월 임금액, 주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3년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취약계층 고용확인을 할 수 없어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별, 취약계층정보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3년

※ 위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취약계층 고용확인을 할 수 없어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3년

※ 위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유급근로자 고용확인을 할 수 없어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 . .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

보안각서

본사 “업체명” 은(는)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카페공간 사용·수익허가” 「(2025년 월 일 ~ 2025년 월 일)」 관련 사업에 대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취득한 제반 사항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안관계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며 용역사업 추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업무상 지득한 제반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개인의 영리 목적 등 사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2. 본사는 본 사업의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모든 자료를 사업종료 시 삭제 조치 할 것이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일체 보유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3. 본사는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관령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사는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 . .

상 호 :

대표자 : (인)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장 귀하

청 럽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 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충남 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법인 충남 경제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인)

【붙임 1】

붙임1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 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마. 노숙인
 -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이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 단, '사회서비스대상 취약계층'은 위 취약계층 및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 포함

【붙임 2】

붙임2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증명서(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 소득

[단위: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24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2,941,039	4,796,385	7,368,606	8,165,652	9,200,752
60%	1,764,623	2,877,831	4,421,164	4,899,391	5,520,451

제2호(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단,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부터 12개월까지 이수 사실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 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업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등에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을 조회·비교하여 취득이력 유무 여부 확인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신설>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 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적,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및 미진학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 여부를 판단
-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 *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저소득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 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저소득자'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일반근로자로 '18.5.1 고용된 자가 '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